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8 차 국 방 위 원 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베트남 민간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19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법률 제정 필요성	5
2. 제정안의 조문체계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진실규명의 범위(안 제3조)	12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안 제8조)	15
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안 제10조)	18
라.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22조)	20
마. 진실규명 신청(안 제25조)	23
바. 진실규명 조사 방법(안 제30조제10항)	25
※참고자료: 베트남전쟁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경과	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3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개인과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는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입니다.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파병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를 겪었으며, 그 고통은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이 남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주요내용

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학살·폭력·성폭력·행방불명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살해·사체훼손·상해 후 사망·상해·행방불명·구금·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조작 사건,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등의 사망·상해·실종사건과 대한민국 국군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자살·

자해·정신질환, 전쟁후유증,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제3조).

다.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피해자 등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법률 제정 필요성

□ 한국정부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음.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1964년 미국의 요청에 이어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을 결정하였는데, 1차로 140명을 파병한 이래로 1973년 최종 철수할 때까지 최대 상주병력 49,869명(1968년 기준)을 베트남 전쟁에 참전시켰음.

□ 한국정부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참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하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¹⁾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은 1999년부터 한국 사회에 알려져 왔으며, 피해자들은 한국정부에 진상조사와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해 왔음.

1)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한 전 득 르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2001.8.)에서 사과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의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뒤 사과의 뜻을 표명(2004.10.)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막식의 영상축전을 통해 유감을 표명(2018.8.)하였음.

특히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 사건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 시작했음.²⁾

제정안은 전쟁 당시 발생한 ①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성폭력 등과 ②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에 의한 은폐 및 ③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 등에 대한 사망·상해 등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제20대·제21대 유사한 취지의 특별법안 내역]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의원명	제안일자	의결결과
2122694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2023-06-16	임기만료폐기
212020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의원 등 25인	2023-02-23	임기만료폐기
2024834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대의의원 등 12인	2020-04-03	임기만료폐기

☐ 참고로, 베트남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한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제20대

2)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참고자료. 베트남전쟁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경과 참조.

와 제21대 국회 걸쳐 3건이 회부된 바 있으나, 임기말 시기 등에 발의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 그간 베트남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한 진실규명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보고서 등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우리 국군의 개입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인 소위 ‘베트콩’이 우리 국군으로 위장하여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³⁾

-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이 남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시민

3) 국회사무처, 「제403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23. 2. 17.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3. 8.

단체 측과 참전단체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보유 중인 군사(軍史) 자료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제한되며, 진실규명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조사가 필수적이나, 베트남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의 공론화를 지양하고 있어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법안 제정의 실익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불행한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으며, 202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과거사 문제 관련 베트남 정부는 ‘과거는 뒤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공론화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상기 베트남측 입장 고려 시, 베트남 현지 조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베트남전쟁 시기의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법 제정과 관련된 그동안 논의 경과 및 관계부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의 조문체계

□ 제정안(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개의 장에 5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법안의 목적 및 취지로 인하여 법문 표현이나 자구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주요 조문체계는 대부분이 기존 과거사 진상규명법들과 유사한 조문체계를 갖추고 있음.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과 국방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이라 함)과 조문체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주요 규정사항 중 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등만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과 5·18진상규명법의 조문 비교]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	5·18진상규명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의 설치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 제4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7조 위원회의 업무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6조 위원회의 업무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	5·18진상규명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7조 의사의 공개 -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0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 진실규명 직권조사 제25조 진실규명 신청 제26조 신청의 방식 제27조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 진상규명 신청 제24조 신청의 방식 -
제28조 각하결정 제29조 진실규명 조사개시 제30조 진실규명 조사방법 제31조 동행명령 제32조 검증 제33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4조 진실규명결정 제35조 진실규명불능결정 제36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7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8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0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25조 각하결정 제26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8조 동행명령 제29조 검증 제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 진상규명결정 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6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41조 신청자 등의 보호 제42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 제43조 책임의 감면 등 제44조 불이익 금지	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 제50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1조 신변보호조치 제52조 책임의 감면 등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	5·18진상규명법
제45조 피해 및 명예회복 - 제46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46 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55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47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존중	-
제48조 비밀준수 의무 제49조 자격사칭 금지 제5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1조 피해자 지원단체 영리조직의 제한 제52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58조 비밀준수 의무 제59조 자격사칭 금지 제6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53조 운송비·여비 등 제54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운송비·여비 등 제65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 제57조 형의 감경 등 제57조(誤)→제58조(正) 과태료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형의 감경 등 제70조 과태료

주. 제정안의 조문을 중심으로 「5·18진상규명법」의 관련 조문을 정리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 조문이 5·18진상규명법의 조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안 제3조의 진실규명의 범위와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에서 국가기관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0조의 진실규명 조사 방법에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입법방식 등을 중심으로 주요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진실규명의 범위(안 제3조)

제정안은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로 ①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② 이와 관련된 국방부·군 기관·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조작 사건 및 ③ 베트남전 시기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등의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진실규명의 범위) 제5조에 따른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살해·사체훼손·상해 후 사망·상해·행방불명·구금·성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제1호에 따른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 3. 파병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베트남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등의 사망·상해·실종사건 나. 대한민국 국군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자살·자해·정신질환, 전쟁후유증,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그간 한국정부에 해당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음.

또한, 파병군인들이 베트남전쟁 시기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진실규명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해·성폭력 등과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파병군인 등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20대 · 제21대 유사한 취지의 특별법안 내역]

의안명	대표발의	진실규명(조사) 범위
(제22대) 베트남전쟁 시기 진실규명법안	민형배의원	베트남전 시기 국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살해·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 은폐·왜곡·조작, 그리고 파병군인 등의 불법 사망·상해·실종 사건
(제21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윤미향의원	베트남전 중 국군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인권침해 전반, 정부 조사 경위·조작 의혹, 및 위원회 인정 사건
(제21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베트남전 중 국군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인권침해 전반, 정부 조사 경위·조작 의혹, 및 위원회 인정 사건
(제20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대의원	베트남전 당시 국군 작전(및 작전 중 행위)에 따른 살해·사체훼손·행방불명·상해·성폭행·구금·가혹행위 등

- 한편, 제정안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파병군인 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베트남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해 발의되었던 기존의 3건의 제정안에서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파병군인 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과정에서 제정안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될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안 제8조)

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인권감수성 및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음.⁴⁾

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권감수성 및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역사고증·사료편찬·지역조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함.

- 제정안은 인권감수성 및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례]

법률명(약칭)	위원 추천·선출권자
과거사정리법	-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월호참사진상 규명법	-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18진상규명법	- 국회가 추천하는 9인(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함)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다른 법률 사례를 아래 [표]
에서 살펴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8인과 대
통령이 지명하는 1명 등 총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10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 희생자가족대
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 등 17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토록 하고 있음.

- 국방부는 법안 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본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법령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다면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은 관련 입법례 중 국방위원회 소관인 5·18진상 규명법의 입법례에 따라 국회가 위원 전원을 추천토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안 제10조)

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명확히 보장하려는 취지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나,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인 「5·18진상규명법」⁶⁾,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⁷⁾ 등 대부분의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에는 위원회 활동의 연장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연장 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표자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대통령 및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6) 「5·18진상규명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22조)

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토록 규정함.

제 정 안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파견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5·18진상규명법」 등에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공무원 등의 파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국방부는 법안 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본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법령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다면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공무원 파견 관련 다른 법률 사례]

법률명	법률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18진상규명법」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인사혁신처는 파견에 대하여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사제도로서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해야 하며,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 등 인사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안 제22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진실규명 신청(안 제25조)

제정안은 피해자 및 제3조의 진실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5조(진실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제3조의 진실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신청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최대 4년간(기본 3년, 연장 1년) 활동하는 위원회가 기한 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국방위원회 소관인 5·18진상규명법 제23조1항⁸⁾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친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

8)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5·18진실규명법과 비교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와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상당수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민간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진실규명법과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바. 진실규명 조사 방법(안 제30조제10항)

제정안은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0조(진실규명 조사 방법) ⑦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안은 안 제30조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 규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되어,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안 제30조제10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호법과 모순·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안 제30조제10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베트남전쟁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경과

- '20. 4. 21. 베트남 민간인 (1명) 국가배상 소송 제기

* 원고 / 피고 : 응○○○○ / 대한민국(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 < 소송 요지 > —

베트남 꽝남성 디엔안구 풍니마을에 거주하던 베트남 국적의 응○○○○은 1968.2.12. 인근에서 괴룡 1호 작전 중인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 제1중대원들이 풍니마을에 진입하여 본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집단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 배상 소송 제기

- '23. 2. 7. 1심판결 선고 (국가전부패소, 3,000만원 배상)
- '23. 3. 16. 국가 항소 제기
- '25. 1. 17. 항소심판결 선고 (항소 기각)
- '25. 3. 13. 국가 상고 제기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